평등을 일상으로



여성가족부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 (경유)

제 목 『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』배포 및 교육 운영 안내

- 1. 관련
 - 가.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
 - 나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 - 다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 - 라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 - 2. 『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(지침)』을 배포합니다. ①고위직 별도 교육 의무화확대, ②종사자 참여율 기준 강화, ③성희롱 방지조치 등의 지침사항이 개정되었으니, 각 기관에서는 개정된 지침을 준수하여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* 2022년 지침 주요 변경사항 : [붙임1] 2022년 예방교육 운영안내(3페이지~)
 - 3. 『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(지침)』은 책자로 제작되어 각 기관에 배포될(1월 말~2월초) 예정이며,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 - *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(shp.mogef.go.kr) >폭력예방교육 소개 >자료실 >운 영지침, 공지사항
 - * (문의사항) 예방교육 일반 : 권익기반과 02-2100-6437, 6438, 6439 고위직 별도교육, 성고충 상담원 교육 : 교육혁신팀 02-2100-6562 성희롱방지조치 : 권익지원과 02-2100-6392, 6395, 6429, 6393, 6398
 - 4. 아울러, 각 기관에서는 배포처 목록(붙임2)에 따라 관할 소속기관에 지정 수량을 배포하여 주시고 공문을 시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, 각급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은 별도로 책자가 제공되지 않으니,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는 관할하는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이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안내(지침)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(지침) 1부.
 - 2.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배포처(10,000부) 1부. 끝.

여 성 가 족 부



수신자 교육청, 교육지원청, 대학

협조자

01/19 01/19 01/19 01/19 수 신 조교 연구원 교수 교수 전성은 신선아 이효주 노성동 01/20 센터장 김정희 시행 권익기반과-331 (2022-01-18) 접수 학생상담센터-1998 (2022.01.19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(여성가족부) 우 03171 / http://www.mogef.go.kr

2100-6445 전송 02-2100-6482 / dokdonuna@korea.kr / 비공개 전화